

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

I. 개황

- 호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규제와 금지콘텐츠의 온라인 유통방지 규제를 위해서, 통신문화부(DCA) 소관 행정규제기구인 '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(ACMA)¹⁾, '온라인 권리보호 감독관(eSafety Commissioner)', '등급분류위원회(Classification Board)'를 통한 행정규제와 법에 근거한 의무적 사업자 규제를 연계한 협력적인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를 구축·운영

□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규제

- 방송서비스 분야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DCA 소관 행정규제기구인 ACMA에 등록한 **방송규정(ABC방송규정, SBS방송규정, 상업방송규정 등)**을 근거로 1차적인 내용규제를 담당하고, 처리가 미흡하거나 중대한 사안(면허조건 위반 등 사항)에 대해서는 ACMA가 필요한 조사와 권고 또는 제재조치(면허방송 대상)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규제

□ 온라인 유통금지 콘텐츠 규제

- 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유통금지콘텐츠의 대상 및 기준과 사업자단체가 제정하여 '온라인 권리보호 감독관(이하 온라인감독관)'에게 등록한 '사업자규정'을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자율적 대응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,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온라인감독관이 추가적인 행정규제를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용

□ 아동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

- 등급분류위원회의 콘텐츠 등급 분류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 콘텐츠에 대해 기술적 수단을 통한 연령별 접근제한 규제 방식 적용
- 온라인 학대정보를 직접 접촉한 아동청소년이나 그 보호자는 관련 온라인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처리가 미흡한 경우 온라인감독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규제를 적용

1) DCA :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Arts, ACMA : Australia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

II. 규제 대상 및 근거

- 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대상과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기준 준수,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, 온라인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으로 구분

□ 방송프로그램 내용 기준 준수 의무 대상 및 근거

규제 대상 및 근거	규제 대상		근 거
	규제 대상 및 근거	공영방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BC방송 • SBS방송
공통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11장 제2절(민원 관련)
면허방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업방송 • 커뮤니티방송 • 유료/무료 유선 방송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2부속법(면허조건 내용기준)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9장(프로그램 기준)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9B장(사업자 방송규정 관련)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11장 제1절(민원 관련) • 방송서비스법(1992) 제10장 제3절(제재 조치)
규제 내용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(2005) 제10조
규제 대상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일반 기준에 따른 금지 사항(폭력, 노출, 언어폭력, 차별 등) • 아동청소년 보호 사항 • 프로그램 등급 분류 및 적용 •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공정성 • 시청자 오도 및 선동 금지 사항 • 장애인 자막 기준 • 협찬 기준 등 		

□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 및 근거

규제 대상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유통금지 콘텐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청소년유해물, 테러선동 정보, 범죄 소개 및 조장 정보, 아동성범죄 관련 정보, 성적 또는 폭력적 학대 정보 등과 같은 등급분류위원회가 금지콘텐츠로 분류한 콘텐츠의 유통 방지 • 잠재적 유통금지 콘텐츠의 임시 차단 <p>※ 유통 금지 및 잠재적 유통 금지 콘텐츠의 기준은 아래 자료 참조</p>
규제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급분류법(Classification Act 1995) 및 등급분류 규정(Classification Code) • 방송서비스법(1992)의 제5부속법 및 제7부속법 • 온라인 권리보호 증진법(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) 등

※ 유통 금지콘텐츠(prohibited content)

- 영상물과 게임 콘텐츠인 경우
 - (a) 등급분류위원회(Classification Board)가 RC 혹은 X18+로 분류한 콘텐츠
 - (b) 등급분류위원회가 R18+ 등급으로 분류한 콘텐츠 가운데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
 - (c) 등급분류위원회가 MA15+로 분류한 콘텐츠 가운데,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, 콘텐츠가 텍스트와/또는 한 개 이상의 동영상 이미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; 상업서비스(뉴스 서비스나 시사 서비스 제외)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
 - (d) 등급분류위원회가 MA15+로 분류한 콘텐츠 가운데,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, 콘텐츠가 모바일 프리미엄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
- 전자 발간물인 경우
 - Category 1-Restricted, Category 2-Restricted, RC 등급 정보

※ 등급분류 종류 : 영상물인 경우, G, PG, M, MA15+, R18+, X18+, RC 등급으로 구분, 전자 발간물인 경우, Unrestricted, Category 1-Restricted, Category 2-Restricted, RC 등급으로 구분

※ 잠재적 유통 금지콘텐츠(potential prohibited content)

- 금지콘텐츠로 확정되지 않은 콘텐츠 가운데,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할 경우, 유통금지 콘텐츠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온라인감독관이 판단한 콘텐츠

□ 온라인 아동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제한 대상 및 근거

규제 대상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급분류위원회가 MA+ 등급 이상으로 분류한 콘텐츠 : 주제, 선정성, 폭력성, 언어수준, 약물이용, 음란성 등을 기준으로 만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노출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한 콘텐츠에 대해 접근제한 시스템 부착 의무 •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학대정보 : 관련 정보를 접촉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한 학대정보의 삭제 의무
규제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서비스법(1992)의 제5부속법 및 제7부속법 • 온라인 권리보호 증진법(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) 등

III. 규제 기구

□ ACMA의 조직 구성 및 직무

주요 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내용규제 관련 업무) 사업자 방송규정 제정 지원 및 감독, 방송프로그램 기준 개발 및 감독 업무, 방송프로그램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사 등 •(기타 주요 업무)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규제 관련 업무 등 	
조직 구성	위원회 Member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장 1인(상임), 부위원장 1인(상임), 1인 ~ 7인의 일반위원(상임 또는 비상임)으로 구성, 연방총독이 임명(ACMA 설치법(2005) 제19조에 근거) ※ 부위원(Associate Members) : 조사 또는 청문회 등 관련 특정 업무 담당, 필요에 따라 DCMS 장관 임명(상임 또는 비상임)
	소위원회 Division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CMA가 위원(부위원 포함 가능) 3인 이상으로 구성 : 지속적인 ACMA 직무 위임 수행
	직원 Staff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법(1999)에 따라 임용된 공직자들로 구성 : ACMA가 일부 업무 위임 가능
회의 운영	전체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무 수행 관련 사안 결정을 위해 위원장 소집, 또는 주무장관 요구시, 2인 이상 위원 요구시 소집 가능
	소위원회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ACMA가 서면으로 위임
	비공식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회의 결정 사항으로 위임한 사안 결정 가능

□ 온라인 권리보호 감독관

기관 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권리보호증진법(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)에 근거 설치 • DCA 장관이 임명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목적의 법적 행정 기관 • 호주 통신미디어청(ACMA)이 사무국 지원(약 80명 직원, 공무원이 1/2) • 콘텐츠 규제 관련해서는 ACMA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1인 기관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등급분류위원회

기관 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96년에 시행한 등급분류법(Classification (Publications, Films and Computer Games) Act of 1995)에 의해 설치된 DCA 소관 기관 • 등급 위원은 총원이 2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, 대표위원(Director), 부대표위원(Deputy Director), 기타 위원(Other Members)으로 구성, 연방총독(The Governor General)이 위촉 • 이용자, 콘텐츠서비스 사업자, 온라인감독관, ACMA 등이 요청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업무 수행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IV. 규제 방법 및 절차

- 호주의 방송프로그램 내용규제는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법, ABC방송법, SBS방송법 등에 따른 프로그램기준(Programme Standards), 면허조건(License Conditions), 사업자 방송규정(해당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ACMA에 등록) 등에서 제시한 내용 기준의 준수 의무를 방송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체계로 구축
-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당 방송사가 대응하고, 조치가 미흡하거나 ACMA에 직접 제기한 민원 사안(일반기준 및 면허조건 관련 사항 등)에 대해서는 ACMA가 방송 특성별로 다른 방식의 절차와 대응 조치를 적용하는 체계로 운영
 - 공영방송(ABC, SBS) 위반 사항 : 위반 정도에 따라 ACMA의 시정 권고
 - ACMA의 주무장관 보고 → 주무 장관의 의회 보고
 - 면허방송(상업면허방송 등) 위반 사항 : 위반 정도에 따라 방송사 자체 개선 유도 → 행정처분 → 사법처리 조치

□ 방송 내용 관련 민원 처리 및 제재 절차

구분	민원 처리 및 제재 체계	
방송사 대응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방송사의 검토 및 대응(30일 이내 해결 노력) → 타당한 사안에 대한 방송사 자체의 오류 수정 또는 개선 조치 시행 → 60일 이내에 미해결 또는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이 ACMA에 추가 조사 요청 가능(방송서비스법 제148조) 	
ACMA 조치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0일 이내에 방송사 차원의 미해결 민원 사안 조사 • 방송면허조건 관련 직접 접수 민원(방송서비스법 제147조) 조사 	
	공영방송 관련 위반 사항 조치 (방송서비스법 제11장 제2절)	면허방송 관련 위반 사항 조치 (방송서비스법 제10장 제3절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정(시청자사과, 철회 등) 권고 조치 • 주무장관 보고 (시정조치 미흡의 경우) • 주무 장관의 의회 보고 (7일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사의 개선 계획(교육 등), 시정확약서 작성 • 행정처분 : 시정명령, 면허정지, 면허취소 • 사법처리 : 과징금(최고 3.3억원) 부과 또는 기소 요청 등

- 호주의 온라인 내용규제 체계는 **관련 서비스(온라인 서비스,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,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구분)** 사업자들이 제정하여 '온라인 감독관'에게 등록된 '사업자규정'을 통해서, 금지콘텐츠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제한에 필요한 조치의 실행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한 사업자들을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**제재**하는 방식으로 구축·운영
 - 온라인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항은 형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근거한 사법규제 병행
 -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: 국외 접속 금지콘텐츠에 대한 경찰 당국 통지 의무와 차단 의무 부과
 -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대상 : 접속차단, 서비스중지, 링크 삭제 의무 및 시정명령 조치
 -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대상 :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정보의 접속 차단 의무 부과 및 차단 명령 조치

□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조치 사항(제7부속법 근거)

대상 콘텐츠	서비스	명령 고지	의무 조치 내용			
금지콘텐츠 (RC, X18+)	호스팅 서비스	최종접속차단	시정조치A	· 해당 콘텐츠의 접속차단 또는 공급 중지 (통지 다음 날 오후6시까지)		
	라이브 서비스	최종서비스중지				
	링크 서비스	최종링크삭제				
금지콘텐츠 (R18+, MA15+)	호스팅 서비스	최종접속차단	시정조치B	· 시정조치A 또는 접속제한 장치 부착 (통지 다음 날 오후6시까지)		
	라이브 서비스	최종서비스중지				
	링크 서비스	최종 링크삭제				
잠재적 금지콘텐츠 (RC, X18+)	호스팅 서비스	임시차단	· 시정조치 A · 등급분류 의뢰 ➡	RC, X18+ 등급판정	A시정조치	
	라이브 서비스	임시서비스중지		· 콘텐츠 철회 · no금지콘텐츠 · 이행각서제출	조치 취소	
	링크 서비스	임시링크삭제				
잠재적 금지콘텐츠 (R18+, MA15+)	호스팅 서비스	임시차단	· 시정조치 B · 등급분류 의뢰 ➡	R18+, MA15+ 등급판정	A시정조치	
	라이브 서비스	임시서비스중지				· 콘텐츠 철회 · No금지콘텐츠 · 이행각서제출
	링크 서비스	임시링크삭제				

□ 국외 금지콘텐츠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조치(제5부속법)

금지콘텐츠 구분	온라인감독관의 조치 사항
• 사법 당국 조사 필요 콘텐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찰 당국 통지 의무(경찰의 사법당국 이첩 가능) ▶ 협력기관 통지 의무
• 사업자규정 적용 대상 콘텐츠	▶ 해당 사업자 통지(규정에 따른 방지조치 시행)
• 사업자규정 미적용 대상 콘텐츠	▶ 표준접속방지 명령 고지 (기술적 제한조치와 같은 '접속방지대안조치' 실행시 해당 명령 조치 미적용)
• 기존 조치 금지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	▶ 특별접속방지 명령 고지 (기술적 제한조치와 같은 '접속방지대안조치' 실행시 해당 명령 조치 미적용)

□ 아동청소년 학대정보 관련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대상 조치
(온라인 권리보호 증진법)

구분	민원 처리 및 조치 내용
시정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원 접수 사업자 : 48시간 이내 자율적 삭제 유도 • 학대정보를 송신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(제42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정보의 추가적 송신 제한 및 사과 조치 요구 •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 삭제 조치 미시행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그룹1사업자) 온라인감독관의 48시간 이내 삭제 요청(제29조) ▶ (그룹2사업자) 온라인감독관의 48시간 이내 삭제 요구(제35조) ▶ 미준수 사업자의 공개 조치
제재 조치	• 제35조 및 제35조 관련 조치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, 금지명령, 범칙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

□ 디지털성범죄 정보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조치
(2018년 개정 온라인 권리보호 증진법 근거)

구분	민원 처리 및 조치 내용
시정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업자(소셜미디어 및 호스팅 서비스)에 대한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당사자의 유통금지 요구(제19B조) ▶ 온라인감독관의 48시간 이내 삭제 요구(제44D 및 제44F조) •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송신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(제44E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온라인감독관의 48시간 이내 삭제 요구
제재 조치	• 제44D조 및 제44E조 관련 조치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, 금지명령, 범칙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